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3-171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바이셀스탠다드, ㈜알티너스
임직원	
기 타	

2. 조치내용

□ 과징금 및 과태료 면제

○ 2개사는 공시의무 위반을 자진신고하여 그간 영업을 중단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사업재편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 점을 감안하여 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면제함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

○ ㈜바이셀스탠다드는 '22.2월~'22.10월 기간중 총 7차례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, '21.4월~'22.11월 기간중 총 15차례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하면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○ ㈜알티너스는 '22.10월~'22.11월 기간중 총 4차례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하면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 제1항, 제130조 제1항, 제429조 제1항, 제449조 제1항